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88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박용갑 · 여기구 · 정준호
김병주 · 한민수 · 허영
윤종균 · 노종면 · 윤준병
이용우 · 진성준 · 서영석
서삼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거주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요양 · 치매 · 중증질환 등으로 병원비, 약제비, 요양비, 간병비 등 간병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해당 간병 비용 등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자체가 감소하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도 감소하는 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간병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 · 요양 · 간병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 · 약제비 · 요양비 · 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채무”를 “채무 및 피상속인간병비”로 한다.

4. 피상속인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하여 상속인이 부담한 진료비·약제비·요양비·간병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간병비”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 간병비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u>피상속인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하여 상속인이 부담한 진료비·약제비·요양비·간병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간병비”라 한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u>채무</u> 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④ ----- -----채무 및 <u>피상속인간병비</u> ----- ----- ---